

내부거래위원회 규정

2023.09.14

엘에스머트리얼즈(주)

제1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내부거래위원회규정(이하 "본 규정"이라 한다)은 LS머트리얼즈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정관에 따라 내부거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 2 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.

제 3 조 (구성)

1.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.
2. 위원회는 총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
3. 위원의 임기는 이사임기 만료일까지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4. 위원회 소속의 이사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(제2항의 구성에 미달한 경우) 3개월 이내에 위원회 참여에 결격사유가 없는 이사를 이사회에서 신규 선임한다.
5. 결원으로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기존위원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.

제 4 조 (위원장)

1.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 위원 1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한다.
2. 위원장 유고 시에는 먼저 선임된 위원의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선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.

제 5 조 (위원회의 소집)

1. 위원회는 심의, 결의 대상 건이 발생하는 경우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2.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일시를 정하고 늦어도 그 24시간 전까지 각 소속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3. 제2항의 소집통지는 문서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.
4. 소속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위원회는 회의의 연기나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, 이러한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 6 조 (결의방법)

1.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2.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의 관계자 또는 제3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.
3.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4.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5.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7 조 (권한 및 의무)

[권한]

1. 내부거래승인권

①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의 필요성과 거래조건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, 회사와 이해관계자간의 모든 거래 중 그 단일 거래 규모가 최근연도 자산규모의 2% 이상의 자산거래, 최근연도 매출의 2% 이상의 매출거래, 최근연도 매입의 2% 이상의 매입거래, 최근연도 판매비와관리비의 2% 이상의 비용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거래금액이 동항 제1호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간사가 중요한 거래라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상정한 내부거래의 승인

③ 거래금액이 동항 제1호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경상적 및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내부거래에 대한 승인

2. 내부거래 보고 청취권

위원회는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을 수 있다.

3. 내부거래 직권 조사 명령권

위원회는 언제든지 직접조사를 실시 또는 간사에게 내부거래 세부현황 자료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.

4. 내부거래 시정 조치 건의권

위원회는 법령 및 회사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.

5. 위원회는 회사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.

[의무]

1. 위원회의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.

2. 위원회는 제7조1항에 규정된 내부거래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 또는 결의하며, 회사가 법령 또는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하는 내부거래를 한 경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위원회의 조치)

1. 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령 또는 요구할 수 있다.

2. 위원회는 제1항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이사회에 즉시 보고하며, 이사회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9 조 (관계인의 의견 청취)

1.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2.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 10 조 (통지의무)

1. 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2.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이사 및 위원회에 출석한 이사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3.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 단, 결의사항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는 원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4. 위원회의 부의사항 중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 사항으로서 이사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.

제 11 조 (의사록)

1.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이사회 규정에 준하여 의사록을 보관한다.

2.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과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,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간사)

1.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고, 의장이 정하는 자가 이에 임한다.
2.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관리한다.

제 13 조 (경비)

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.

제 14 조 (규정의 개폐)

1. 본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2. 본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, 이사회규정 및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.